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9일, 박지혜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4.16.) 상정, 축조심사, 의
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상정, 소위
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지혜 의원)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희석)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는 통계자료에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¹⁾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함.

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 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u>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²⁾에 따른 기관이나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 ----- ----- ----- -----. <u>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공급</u> <u>2.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 ·재생에너지 사용량</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11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하여 설비별(발전기·보일러별) 에너지 생산량, 발전량, 설비용량 정보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음.

[표 2]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통계자료 관리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수집 정보) 11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하여 설비별(발전기·보일러별) 에너지 생산량, 발전량, 설비용량 정보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작성○ (수집 방법) 에너지의 종류(전기/열) 및 용도(자가용/사업용)에 따라
 ❶사업용 전기, ❷자가용 전기, ❸열로 나누어 자료 수집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³⁾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 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는 통계자료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외에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분석이 가능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자가용

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톤CO₂e 중 산업부문은 260.5백만톤CO₂e로 35.8%를 차지하여 전환부문(269.6백만톤CO₂e, 37.1%)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40.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부문 배출량은 54.0%(392.9백만톤CO₂e)로 추산됨(윤순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참조)

설비 설치정보, 직접 PPA 체결정보 등으로 인해 통계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량만이 아닌 ‘사용량 또는 보급량’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개정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5)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대신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작성자료의 범위를 수집가능한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제공자의 응답의무를 규정함.

수정주요내용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부문”을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로, “사용량”을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u><신 설></u> ② (생 략)	<u>에너지의 수요 · 공급</u> 2. <u>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u> ② (현행과 같음)	2. <u>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u> <u>-----사 용 량</u> <u>또는 보급량</u> ② (개정안과 같음)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사용자”를 “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u>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u><신 설></u> <u><신 설></u>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 ----- ----- <u>다음 각</u> <u>호의 사항에</u> ----- ----- ----- ----- ----- <u>사용자</u> <u>(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u> ----- <u>.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u> <u>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u>

② (생 략)	<u>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u> <u>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u> <u>또는 보급량</u> ② (현행과 같음)
---------	--